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15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서영교·조인철·이수진

이해식 • 박상혁 • 진선미

박희승 · 임오경 · 강유정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구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구독물을 이용하고 있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음란·폭력·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되는 등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제한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안 제47조제2항).

법률 제 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 2. 음란·폭력·마약 등의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여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신문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문등의 구독 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용자가 신문등을 구독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신문등의 구독) ① (생	제47조(신문등의 구독)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	②		
을 신청한 신문등이 <u>「출판문</u>	<u>다음 각 호</u>		
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간행물인</u>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u> <신 설></u>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u><신 설></u>	2. 음란·폭력·마약 등의 행위		
	를 과도하게 묘사하여 수용자		
	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u>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u>		
	으로서 법무부렁으로 정하는		
	<u>신문등</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